



제1345호
2017년 3월 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4 3 1 호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등	2
○ 공	고 제 4 3 3 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3
○ 공	고 제 4 3 4 호 2017년 0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6
○ 공	고 제 4 3 7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11
○ 공	고 제 4 3 9 호 자동차대여사업 행정처분 직권말소에 따른 이해관계인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4
○ 공	고 제 4 4 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5
○ 공	고 제 4 4 3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22
○ 공	고 제 4 4 6 호 2017년 3월 취득세 공시 송달	41
○ 의 회 사 무 공 고	국 제 4 호 휴대전화 사용료 반납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43

고 시

○ 고	시 제 2 7 호 도로명주소 고시	44
-----	--------------------	----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7-4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등」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등
2.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피부과자	주소지	미배달 사유	위반내용		비고
				소재지	위반내용	
1	전*중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0*번길 *1, 1*3*동 *2*1호(중동, 그*타운)	이사감	간석동 48-11	무단용도변경(숙박시설→주택) 조적조, 449.43㎡	시정촉구

4. 공고기간: 2017. 03. 02. ~ 2017. 03. 20.
5. 게시장소: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2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7-433호

반환기간 5년 이상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7. 3. 3. ~ 2017. 3. 16. (14일간)
3.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8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별첨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과 경리팀(☎ 032-453-22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현부서	납부자	반환기일	반환가능액	비고
보관금-건강보험	2009-02-04	1월분 환경개선부담금조사원 인부임 공제	환경보전과	박*신외 3명	2009-03-04	2,920	
보관금-국민연금	2009-02-04	1월분 환경개선부담금조사원 인부임 공제	환경보전과	박*신외 3명	2009-03-04	4,320	
보관금-국민연금	2009-03-05	환경개선부담금조사원 인부임 공제	환경보전과	박*신외 3명	2009-04-05	28,110	
보관금-건강보험	2009-03-05	환경개선부담금조사원 인부임 공제	환경보전과	박*신외 3명	2009-04-05	46,310	
보관금-건강보험	2009-08-05	환경개선부담금조사원 급여 공제	환경보전과	박*신외 3명	2009-09-05	69,030	
보관금-국민연금	2009-08-05	환경개선부담금조사원 급여 공제	환경보전과	박*신외 3명	2009-09-05	114,390	
보관금-국민연금	2009-09-02	환경개선부담금조사원 국민연금 추가공제	환경보전과	박*신외 3명	2009-10-02	2,250	
보관금-고용보험	2010-06-09	2010.5월 시설물조사원 임금 공제	교통행정과	진*주 등 21명	2010-07-09	59,640	
보관금-건강보험	2010-06-18	2010.6월 직원 등 건강보험료	총무과	남동구청장	2010-07-18	1,176,730	
보관금-고용보험	2010-06-22	2010년 시설물 조사원 급여공제	교통행정과	진*주 등 21명	2010-07-22	17,010	
보관금-건강보험	2010-07-09	2010.6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임금공제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녹지팀	2010-08-09	27,820	
보관금-건강보험	2010-07-28	질병휴직에 따른 보험료 과미납분(2010.8~12월)	총무과	김*환	2010-08-28	277,480	
보관금-국민연금	2010-10-01	2010.9월 대체인력 임금공제	총무과	한*숙외 6명	2010-10-01	238,500	
보관금-국민연금	2010-09-08	2010.8월 대체인력 임금공제	총무과	한*숙외 6명	2010-10-08	51,530	
보관금-국민연금	2010-09-20	2010.9월 희망근로자 임금공제	일자리정책과	신*진 외 552명	2010-10-20	17,430	
보관금-건강보험	2010-10-01	2010.9월 개별주택특성조사 인부임공제	세무1과	김*권외 3명	2010-11-01	3,990	
보관금-건강보험	2010-10-20	2010.10월 직원등 건강보험	총무과	남동구청장	2010-11-20	1,160,250	
보관금-고용보험	2010-11-01	2010.10월 교통유발부담금조사원 임금공제	교통행정과	이*미 등 4명	2010-12-01	12,820	
보관금-건강보험	2010-11-01	2010.10월 개별주택특성조사 인부임공제	세무1과	김*권외 3명	2010-12-01	14,900	
보관금-건강보험	2010-11-03	2010.10월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임금공제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녹지팀	2010-12-03	159,000	
보관금-건강보험	2010-12-28	2010.12월 개별주택특성조사 임금공제	세무1과	신*아	2010-12-28	25,830	
보관금-고용보험	2010-12-03	2010.11월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임금공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2010-13-03	20,050	
보관금-고용보험	2010-12-31	2010.12월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임금공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2010-13-31	11,740	
보관금-건강보험	2010-12-31	2010.11월 도시숲관리원 임금공제	공원녹지과	임*남	2010-13-31	33,240	
보관금-고용보험	2011-01-20	2011.1월 직원등 고용보험	총무과	남동구청장	2011-02-20	185,520	
보관금-기타보관금	2011-01-20	희망근로 기프트카드 사용잔액	일자리정책과	주민복지과	2011-02-20	7,391,880	
보관금-고용보험	2011-02-01	2011.1월 실무수습임금공제	총무과	이*호외4명	2011-03-01	30,270	
보관금-고용보험	2011-02-01	2011.1월 대체인력 임금공제	총무과	김*진외7명	2011-03-01	30,720	

보관금-고용보험	2011-02-18	2011.2월 직원등 고용보험	총무과	남동구청장	2011-03-18	397,790	
보관금-고용보험	2011-03-02	2011.2월 실무수습 임금공제	총무과	이*호외4명	2011-04-02	30,830	
보관금-고용보험	2011-03-02	2011.2월 대체인력 임금공제	총무과	김*진외8명	2011-04-02	33,050	
보관금-고용보험	2011-03-18	2011.3월 직원등 고용보험	총무과	남동구청장	2011-04-18	306,710	
보관금-고용보험	2011-03-31	2011.3월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 급여공제	일자리정책과	이*원 외 146명	2011-04-31	457,860	
보관금-고용보험	2011-04-01	2011.3월 실무수습 임금공제	총무과	이*호외4명	2011-05-01	19,660	
보관금-국민연금	2011-04-20	2011.4월 직원등 국민연금	총무과	남동구청장	2011-05-20	8,780	
보관금-상용노조조합비	2011-04-20	2011.4월 직원등 상용노조조합비	총무과	남동구청장	2011-05-20	91,270	
보관금-고용보험	2011-04-20	2011.4월 직원등 고용보험	총무과	남동구청장	2011-05-20	276,580	
보관금-고용보험	2011-04-29	2011.4월 실무수습 임금공제	총무과	이*호외4명	2011-05-29	32,630	
보관금-고용보험	2011-04-29	2011.4월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 급여공제	일자리정책과	이*원 외 142명	2011-05-29	170,400	
보관금-고용보험	2011-06-01	2011.5월 실무수습 임금공제	총무과	이*호외4명	2011-07-01	32,580	
보관금-고용보험	2011-06-20	2011.6월 직원 고용보험	총무과	남동구청장	2011-07-20	110,130	
보관금-고용보험	2011-06-30	2011.6월 지역공동체사업참여자 임금공제	일자리정책과	이*원 외 137명	2011-07-30	2,050	
보관금-고용보험	2011-07-01	2011.6월 실무수습 임금공제	총무과	이*호외4명	2011-08-01	32,580	
보관금-고용보험	2011-08-01	2011.7월 실무수습 임금공제	총무과	이*호외4명	2011-09-01	29,900	
보관금-고용보험	2011-08-03	2011.7월 대체인력 임금공제	총무과	이*영외 11명	2011-09-03	63,540	
보관금-고용보험	2011-09-02	2011.8월 대체인력 임금공제	총무과	이*영외 11명	2011-09-15	19,670	
보관금-고용보험	2011-09-01	2011.8월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 임금공제	일자리정책과	이*연외 154명	2011-09-16	41,980	
보관금-국민연금	2011-08-19	2011.7~8월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원 임금공제	노인장애인과	최*래외 34명	2011-10-11	72,440	
보관금-고용보험	2011-10-20	2011.10월 직원등 고용보험	총무과	남동구청장	2011-10-24	8,970	
보관금-고용보험	2011-11-30	2011.11월 지역공동체사업참여자 임금공제	일자리정책과	이*연외 143명	2011-12-12	68,950	
보관금-고용보험	2011-12-28	2011.12월 일제강점하피해사실조사 일시사역인부임공제	총무과	신*수	2012-01-10	1,890	
보관금-고용보험	2011-12-01	2011.11월 실무수습 임금공제	총무과	김*연외 4명	2012-01-10	8,750	
보관금-고용보험	2011-12-28	2011년 공중방역수의사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농축수산과	길*중	2012-01-10	119,760	
보관금-건강보험	2011-12-20	2011.12월 직원 임금공제	총무과	남동구청장	2012-01-10	148,48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7-434호

공 시 송 달

성 명: 이**규 외 106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17년 0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반송함 장기방치”, “국외이주”, “직권말소” 및 “폐업” 등으로 반송 처리되어 송달 불가능인 바, 당초 납기 2017.03.01.일을 2017.03.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오니 기한 내 금융기관 및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연번	납세번호	납세자번호	개인(법인)명	과세물건	세액합계	공고사유
1	135001 2017 02 2 660 000056	361108-*****	이**규	기타용수	2,7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2	135001 2017 02 2 800 000042	120111-*****	오**상**(주)	기타용수	6,3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	140002 2017 02 2 521 000205	320623-*****	이**태	경정결정분	14,295,530	수령인없음
4	140002 2017 02 2 530 000180	890926-*****	오**미	확정결정분	382,420	수령인없음
5	140002 2017 02 2 530 000183	481125-*****	조**호	확정결정분	386,8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6	140002 2017 02 2 550 000207	282004-*****	정**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4,338,670	이사감
7	140002 2017 02 2 551 000155	800904-*****	정**원	예정신고분	1,376,880	기타
8	140002 2017 02 2 551 000177	660608-*****	안**길	확정결정분	322,780	수령인없음
9	140002 2017 02 2 551 000181	610528-*****	이**형	확정결정분	333,170	수령인없음
10	140002 2017 02 2 570 000130	711114-*****	김**근	예정신고분	917,390	수령인없음
11	140002 2017 02 2 581 000128	730205-*****	임**호	예정신고분	2,591,550	수령인없음
12	140002 2017 02 2 581 000194	460516-*****	조**순	확정결정분	4,632,540	수령인없음
13	140002 2017 02 2 583 000184	600325-*****	유**수	확정결정분	1,665,040	수령인없음
14	140002 2017 02 2 650 000202	480510-*****	조**효	예정결정분	2,288,690	수령인없음
15	140002 2017 02 2 690 000136	710523-*****	문**배	예정신고분	532,020	수령인없음
16	140002 2017 02 2 700 000193	670512-*****	강**우	확정결정분	463,610	수령인없음
17	140002 2017 02 2 710 000150	750208-*****	최**영	예정신고분	505,000	수령인없음
18	140003 2017 02 2 510 000075	120111-*****	(주)한**디**인	2013년 귀속 법인소득세	1,285,930	수령인없음
19	140003 2017 02 2 510 000077	120111-*****	(주)예**컴**엔**	2013년 귀속 법인소득세	1,676,060	기타
20	140003 2017 02 2 510 000078	135811-*****	(주)군**전**	2012년 귀속 법인소득세	289,0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21	140003 2017 02 2 510 000081	120111-*****	(주)한**디**인	2011년 귀속 법인소득세	2,519,750	수령인없음
22	140003 2017 02 2 540 000057	120111-*****	(주)예**컴**엔**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1,174,950	기타
23	140003 2017 02 2 800 000072	120111-*****	(주)세**엔**라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일반법인	10,119,640	기타
24	140004 2017 02 2 510 000902	120111-*****	(주)예**컴**엔**	2015년04월귀속분 :법인원천	290,0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25	140004 2017 02 2 510 000903	120111-*****	(주)예**컴**엔**	2015년05월귀속분 :법인원천	309,450	기타
26	140004 2017 02 2 510 000904	120111-*****	(주)예**컴**엔**	2015년06월귀속분 :법인원천	623,400	기타

27	140004 2017 02 2 510 000905	120111-*****	(주)에**컴**엔**	2015년07월귀속분 :법인원천	11,701,500	기타
28	140004 2017 02 2 510 000906	120111-*****	브**이**온**주**회**	2015년02월귀속분 :근로소득	3,3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29	140004 2017 02 2 510 000914	110111-*****	유**미**어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30,7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0	140004 2017 02 2 510 000955	821218-*****	김**홍	2016년10월귀속분 :사업소득	39,1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1	140004 2017 02 2 510 001249	650420-*****	유**희	2016년10월귀속분 :사업소득	1,2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2	140004 2017 02 2 510 001410	120111-*****	주**회** **산**웃**싱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0,8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3	140004 2017 02 2 510 001419	120111-*****	주**회**명**피**피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101,9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4	140004 2017 02 2 510 001494	131411-*****	(주)케**앤**이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97,170	기타
35	140004 2017 02 2 510 001510	120111-*****	주**회**주**이**씨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11,3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6	140004 2017 02 2 510 001610	110111-*****	수**쿨**(주)	2016년09월귀속분 :사업소득	7,4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7	140004 2017 02 2 510 001611	110111-*****	수**쿨**(주)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49,2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8	140004 2017 02 2 510 001679	120111-*****	주**회**월**트**블**게**	2016년10월귀속분 :사업소득	8,4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39	140004 2017 02 2 510 001841	710303-*****	조**영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10,9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40	140004 2017 02 2 521 000915	780205-*****	정**영	2016년10월귀속분 :사업소득	3,790	이사감
41	140004 2017 02 2 521 001076	781130-*****	조**우	2016년10월귀속분 :사업소득	4,280	이사감
42	140004 2017 02 2 521 001352	120111-*****	(주)현**중**개**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9,710	이사감
43	140004 2017 02 2 521 001502	761112-*****	박**영	2016년10월귀속분 :사업소득	23,7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44	140004 2017 02 2 522 000894	750422-*****	김**형	2013년06월귀속분 :사업소득	7,2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45	140004 2017 02 2 530 000882	660701-*****	김**호	2014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50,7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46	140004 2017 02 2 530 001392	120111-*****	주**회**프**디	2016년01월귀속분 :사업소득	326,150	이사감
47	140004 2017 02 2 530 001624	611027-*****	장**순	2016년10월귀속분 :사업소득	6,340	기타
48	140004 2017 02 2 550 001160	921109-*****	유**수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2,7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49	140004 2017 02 2 550 001307	120111-*****	(주)다**기**리**동**구**	2016년10월귀속분 :사업소득	17,4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50	140004 2017 02 2 550 001592	110111-*****	(주)터**마**크	2016년10월귀속분 :이자소득	10,9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51	140004 2017 02 2 550 001593	110111-*****	(주)터**마**크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3,9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52	140004 2017 02 2 560 000912	110111-*****	(주)오**앤**크	2016년10월귀속분 :사업소득	6,340	기타
53	140004 2017 02 2 560 001408	120111-*****	주**회** **성**앤**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27,0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54	140004 2017 02 2 560 001640	720713-*****	박**서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6,410	기타
55	140004 2017 02 2 582 001424	730202-*****	유**경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4,760	이사감
56	140004 2017 02 2 583 000992	700720-*****	곽**선	2016년10월귀속분 :퇴직소득	11,3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57	140004 2017 02 2 650 001088	640220-*****	이**각	2016년01월귀속분 :사업소득	339,320	수령인없음
58	140004 2017 02 2 660 001599	740505-*****	이**식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8,0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59	140004 2017 02 2 700 001442	700604-*****	강**석	2016년09월귀속분 :사업소득	513,840	수령인없음
60	140004 2017 02 2 710 000917	810318-*****	남**석	2016년10월귀속분 :사업소득	104,920	이사감
61	140004 2017 02 2 710 000972	680204-*****	김**미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1,8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62	140004 2017 02 2 710 000979	740903-*****	연**흠	2016년09월귀속분 :사업소득	6,970	이사감
63	140004 2017 02 2 710 000980	791209-*****	홍**화	2016년09월귀속분 :사업소득	40,2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64	140004 2017 02 2 710 001046	730901-*****	윤**옥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1,3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65	140004 2017 02 2 710 001087	720312-*****	김**왕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8,9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66	140004 2017 02 2 710 001283	120111-*****	로**피**스**(주)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17,6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67	140004 2017 02 2 710 001500	660205-*****	하**식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2,8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68	140004 2017 02 2 800 000930	710215-*****	배**직	2016년09월귀속분 :사업소득	31,720	이사감
69	140004 2017 02 2 800 000965	120111-*****	(주)이**블**이**지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250,5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70	140004 2017 02 2 800 000967	120111-*****	정**이**지	2016년09월귀속분 :사업소득	5,3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71	140004 2017 02 2 800 000968	120111-*****	정**이**지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4,4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72	140004 2017 02 2 800 000991	134111-*****	주**회**한**벤**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37,0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73	140004 2017 02 2 800 001080	690130-*****	강**수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31,5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74	140004 2017 02 2 800 001090	680522-*****	노**현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35,100	기타
75	140004 2017 02 2 800 001091	680522-*****	노**현	2016년09월귀속분 :퇴직소득	35,980	기타
76	140004 2017 02 2 800 001108	731011-*****	김**진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6,7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77	140004 2017 02 2 800 001125	790903-*****	전**숙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20,9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78	140004 2017 02 2 800 001195	120111-*****	보**산**(주)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30,7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79	140004 2017 02 2 800 001305	120111-*****	(주)도**선**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1,580	이사감
80	140004 2017 02 2 800 001308	120111-*****	파**에**유(주)	2016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66,4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81	140004 2017 02 2 800 001320	120111-*****	(주)티**스**공	2016년10월귀속분 :사업소득	31,710	이사감
82	140004 2017 02 2 800 001321	120111-*****	(주)티**스**공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226,200	이사감
83	140004 2017 02 2 800 001324	120111-*****	주**회**엠**이**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57,720	이사감
84	140004 2017 02 2 800 001353	120111-*****	(주)이**프**스**텍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8,0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85	140004 2017 02 2 800 001367	120111-*****	2*세**테***(주)	2016년01월귀속분 :근로소득	14,970	기타
86	140004 2017 02 2 800 001368	120111-*****	2*세**테***(주)	2016년02월귀속분 :근로소득	14,970	기타
87	140004 2017 02 2 800 001369	120111-*****	2*세**테***(주)	2016년03월귀속분 :근로소득	14,970	기타
88	140004 2017 02 2 800 001370	120111-*****	2*세**테***(주)	2016년04월귀속분 :근로소득	14,970	기타
89	140004 2017 02 2 800 001371	120111-*****	2*세**테***(주)	2016년05월귀속분 :근로소득	14,870	기타
90	140004 2017 02 2 800 001372	120111-*****	2*세**테***(주)	2016년06월귀속분 :근로소득	14,750	기타
91	140004 2017 02 2 800 001373	120111-*****	2*세**테***(주)	2016년07월귀속분 :근로소득	14,260	기타
92	140004 2017 02 2 800 001374	120111-*****	2*세**테***(주)	2016년08월귀속분 :근로소득	14,150	기타
93	140004 2017 02 2 800 001375	120111-*****	2*세**테***(주)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4,030	기타
94	140004 2017 02 2 800 001379	120111-*****	주**회** **국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22,2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95	140004 2017 02 2 800 001402	120111-*****	주**회**경**에**티**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9,7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96	140004 2017 02 2 800 001405	120111-*****	(주)이**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38,2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97	140004 2017 02 2 800 001490	680522-*****	노**현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50,960	기타
98	140004 2017 02 2 800 001513	120111-*****	주**회**지**라**팅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0,8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99	140004 2017 02 2 800 001517	820111-*****	윤**수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4,390	이사감
100	140004 2017 02 2 800 001537	120111-*****	대**프**테***(주)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2,5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101	140004 2017 02 2 800 001574	120111-*****	주**회**엠**스**광	2016년09월귀속분 :사업소득	15,220	기타
102	140004 2017 02 2 800 001575	120111-*****	주**회**엠**스**광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339,500	기타
103	140004 2017 02 2 800 001576	120111-*****	주**회**엠**스**광	2016년09월귀속분 :퇴직소득	9,900	기타
104	140004 2017 02 2 800 001590	801115-*****	임**수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8,100	이사감
105	140004 2017 02 2 800 001667	120111-*****	지**씨**크**식**사*G*C*E*H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3,130	이사감
106	140004 2017 02 2 800 001714	120111-*****	(주)화**텍	2016년10월귀속분 :근로소득	53,4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107	140004 2017 02 2 800 001784	120111-*****	주**회**동**컨**턴**	2016년09월귀속분 :근로소득	153,660	이사감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7-437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타인소유 토지 및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 및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1. 공 고 명: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7. 3. 2. ~ 2017. 3. 17. (15일간)

3. 자진처리명령기간: 2017. 3.17. 까지

4. 공시대상: 별 첨 참 조

5. 공고내용

가. 위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차량(이륜차)을 자진하여 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하시기 바라며,

나. 또한 차량(이륜차)을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및 이륜차를 강제처리(폐차)하게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032-453-2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변 호	2016-725	 ○ 차량번호: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미상 (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2017년 2월 9일 - 방치장소: 구월동 1341-10 노상 ○ 보관장소: 서울폐차사업소(032-442-6660)
	2016-823	 ○ 차량번호: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미상(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2017년 2월 17일 - 방치장소: 구월동 1377-5 구월 예술 어린이 공원 ○ 보관장소: 서울폐차사업소(032-442-6660)
	2016-824	 ○ 차량번호: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미상(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2017년 2월 17일 - 방치장소: 구월동 1377-5 구월 예술 어린이 공원 ○ 보관장소: 서울폐차사업소(032-442-6660)
	2016-827	 ○ 차량번호: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미상(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2016년 2월 6일 - 방치장소: 하촌로 40-6(삼성아파트 입구) 만수동 968-1 ○ 보관장소: 인천폐차사업소(032-814-7077)
	2016-828	 ○ 차량번호: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미상(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2016년 1월 25일 - 방치장소: 만수동 908-27 미니스톱앞 ○ 보관장소: 인천폐차사업소(032-814-7077)

2016-830 	○ 차량번호: 앞,뒤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차대번호 손상 ○ 소 유 자: 미상(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2016년 2월 25일 - 방치장소: 구월동 1480-8 족구장 앞 ○ 보 관 장 소: 인천폐차사업소(032-814-7077)
2017-28 	○ 차량번호: 등록번호판 없음 ○ 차대번호: 차대번호 손상 소유주 확인 불가 ○ 소 유 자: 미상(최종 소유자 확인 불가) ○ 방치내역 - 견 인 일: 2016년 2월 10일 - 방치장소: 만수지구대(만수동 1119-2) 주차장 내 ○ 보 관 장 소: 인천폐차사업소(032-814-7077)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7-4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 1.공 고 명: 자동차대여사업 행정처분 직권말소에 따른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공고
- 2.공고기간: 2017. 3. 2.~ 2017. 3. 17.(15일간)
- 3.공고대상

차량번호	자 동 차 소 유 자			송달지 (이해관계인)	이해관계 내용	반송 사유
	차 명 (연식)	성 명	주 소			
58허8528	쏘나타	하나로 오토렌트카 유한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 11층 02호(논현동, 논현테라폴리스)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13, 705동 1305호(하안동, 고층주공아파트) 김지*	저당	수취인 불명
02허5280	SM5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10번지 우리빌딩 13층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저당	이사 불명
01호1315	스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6, 13층(역삼동, 대공빌딩) 하나캐피탈	저당	이사 불명

4.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13조 규정한 직권말소등록 예정에 따라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오니,

나.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17.3.17.까지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913)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7. 3. 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7-44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령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쉽게 이용이 가능하여 배부가 중단된 종이 법령집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시에 해당 부서에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집 관리 조항을 삭제함 (제5장, 제19조~제23조)

나.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할 때 관련부서에 정비안 제출 조항 강화 · 신설함
(안 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90, FAX 453-20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령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쉽게 이용이 가능하여 배부가 중단된 종이 법령집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시에 해당 부서에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령집 관리 조항을 삭제함 (제5장, 제19조~제23조)
-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할 때 관련부서에 정비안 제출 조항 강화 · 신설함 (안 제19조제2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자치법규의 정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0조(자치법규의 정비)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법령집 관리”를 “보칙”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4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의 개정”을 “조례 제20조의 사유”로,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적극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입법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장 <u>법령집 관리</u>	제5장 <u>보칙</u>
제19조(적용도서) <u>법령집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u>	<삭 제>
1. 대한민국 <u>현행법령집</u>	
2. 인천광역시 <u>자치법규집</u>	
3. 인천광역시 남동구 <u>자치법규집</u>	
제20조(관리책임자) <u>법령집을 보관하는 주관부서의 장, 직속기관장, 동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가제정리를 하는 등,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u>	<삭 제>
제21조(관리점검) <u>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법령집 보관 및 활용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추록가제의 불량, 보관상태의 부적절을 인정할 때와 부서장이 법령집의 노후로 추록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추록배부 중지요청을 할 때에는 배부를 중지할 수 있다.</u>	<삭 제>
제22조(변상책임) <u>관리책임자가 법</u>	<삭 제>

령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23조(지정입법)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적극 입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 (생 략)

제19조(지정입법) ① -----

----- 조례 제20조의 사유 -----

----- 주관부서의 장

에게 입법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입법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 련 법 령	☐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자치법규의 정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0조(자치법규의 정비)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 당 없 음”
관 련 자 료	“해 당 없 음”

□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자치법규의 정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정비하여야 한다.

1.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조례규칙에 반영하지 않아 이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2. 상위법령에서 허용한 사항을 조례에서는 불허하는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상위법령 위반)
3.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4. 제정 후 장기간 도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등 유명무실한 경우(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5. 사업종료, 재단 해산, 특별회계 폐지, 위원회의 미구성 등으로 적용대상이 없는 경우(적용대상이 없는 자치법규)
6.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법률 제명 띄어쓰기 등 그 밖에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0조(자치법규의 정비)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7-44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의 정의 및 제정범위 등을 명시하고 입안단계부터 공포·시행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업무처리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입안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자치법규의 정의를 명시함 (안 제3조)
- 나. 자치법규의 공통된 정비 절차를 규정함 (안 제4조 ~ 제8조)
- 다. 각 자치법규별로 제정범위와 절차를 규정함 (안 제9조 ~ 제15조)
- 라. 보고 및 정비지시, 공포·발령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90, FAX 453-20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자치법규의 정의 및 제정범위 등을 명시하고 입안단계부터 공포·시행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업무처리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입안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자치법규의 정의를 명시함 (안 제3조)
- 자치법규의 공통된 정비 절차를 규정함 (안 제4조 ~ 제8조)
- 각 자치법규별로 제정범위와 절차를 규정함 (안 제9조 ~ 제15조)
- 보고 및 정비지시, 공포·발령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 제18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자치법규의 정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0조(자치법규의 정비)

남동구 예규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입법안 작성·심사절차·보고사항 및 공포·발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라 함은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기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3. "훈령" 이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4. "예규" 라 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5. "고유사무"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는 본래적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자치사무를 말한다.

6. "단체위임사무" 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7. "기관위임사무" 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가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조례·규칙·훈령·예규(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를 제·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 라 한다)에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예시문에 의한 입법안을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1.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치법규 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를 방침문서로 간주한다.
4.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 부담을 주는 조례 또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예시문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입법안 심사의뢰) 주관부서에서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법제부서" 라 한다)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을 심사의뢰 할 때에는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방침결정문서 또는 표준안 시달문서
2.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
3. 사전승인·허가대상인 경우 승인·허가 관련문서
4.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
6. 관계법령발체서
7.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7조(심사) 법제부서에서 입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조례·규칙 또는 훈령·예규로 정할 사항인지의 여부
2. 법령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4. 모호한 용어 등의 사용으로 사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5. 과다한 주민의 권익침해나 주민간 형평성 저해 여부
6. 한글맞춤법·띄어쓰기·법규용어의 통일·구성체제·표현의 적정성·구비서류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제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제7조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마친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7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심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재의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서면심의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조례

제9조(조례의 제정범위)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조례사항을 일반적으로 예시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구 및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용부담 및 예산수반 사항
5.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의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8.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10조(조례의 입법절차) 조례의 입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의 방침결정 및 조례안의 작성
2.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결과의 반영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의 반영
4. 조례안 심사의뢰 및 법제부서의 심사
5.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제출 및 심의·의결
6. 조례안의 구청장 결재
7.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의회업무 담당부서를 통하여 의회 제출

제11조(재의요구) ①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조례안 주관부서에서 발의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재의요구안은 법제부서의 사전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 결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한다.

제3장 규칙

제12조(규칙의 제정범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예시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2.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4.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조례의 위임 또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의회나 다른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

제13조(규칙의 입법절차) ① 규칙의 입법절차는 제10조의 조례 입법절차를 준용하되, 의회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 결재를 받은 규칙안을 법제부서에 송부하여 공포의뢰 하여야 한다.

제4장 훈령 및 예규

제14조(정비안 작성) ① 훈령·예규는 자치법규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일반문서의 작성예에 준하여 열거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작성요령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제15조(정비절차) ① 훈령·예규의 정비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의 방침결정 및 훈령·예규안의 작성
2. 정비안 심사의뢰 및 법제부서의 심사
3. 정비안에 대한 구청장 최종결재 및 원안의 법제부서 송부하여 발령의뢰
4. 법제부서에서 발령후 원안 및 발령문 보관

제5장 보고 및 공포·발령

제16조(조례·규칙안의 보고) ①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주관부서에서 법제부서에 송부된 규칙안에 대해서는 공포예정 15일전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조례·규칙안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제17조(자치법규 등의 정비지시) ①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이 일제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정비대상 유무를 검토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비할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공포·발령) 자치법규 등의 공포·발령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제정 조례안 형식 (예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

.

.

.

제○조(○○)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

※ 제명중 “안”의 표기는 내부결재 과정에 있어서는 “(안)”으로 하고, 내부확정후에는 “안”으로 표기함.

(별지 제2호서식)

< 전부개정 조례안 형식 (예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1조(목적)

제2조(○○)

·

·

·

제○조(○○)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별지 제3호서식)

< 일부개정 조례안 형식 (예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을 “-----”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

별표2의 -----란중 “-----”를 “-----”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부개정시 개정문은 다음 < 개정문 작성요령 >을 참고하여 작성함.

《 개정문 작성요령 》

1. 제명을 개정하는 경우

제명 “○○○”을 “○○○” 로 한다.

2. 조문제목을 개정하는 경우

제○조의 제목중 “○○”을 “○○” 으로 한다.
제○조의 제목 “(○○○)”을 “(○○○)” 로 한다.

3. 조 · 항 · 호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제○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④

제○조제○항제○호중 “---”를 “---” 로 한다.

제○조제○항중 “---”를 “---” 로 하고, 같은 조제○항중 “---”을 “---” 로 하며,
같은 조제○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4. 후단 · 단서를 신설 · 개정하는 경우

제○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조 단서중 “---”을 “---” 로 한다.

제○조제○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5. 조 · 항 · 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조의2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제○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⑤

제○조제○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6. 다수조문에서 동일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제○조(제○항제○호) · 제○조 · 제○조(제○항제○호) · 제○조 · 제○조(제○항)
및 제○조제○항중 “-----”을 각각 “-----”로 한다.

7. 별표 · 별지서식을 신설 · 개정 · 삭제 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 폐지 조례안 형식 (예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 신 · 구조문대비표 (예시) >

현행	개정안
제7조(예고대상) ① 구청장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u>입법예고하여야</u>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략) <u>6.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성이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② (생략)	제7조(예고대상) ① ----- ----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u>입법예고하여야</u> -. ----- -----.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예고기간) ① (생략) ② <u>제1항의 규정</u> 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예고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u> ----- ----- -----.
제11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생략) <신설>	제11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u>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제13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13조(공청회) ① ----- <u>경우에는</u> ----- -----. ② ----- 할 때에는 ----- ----- ----- ----- ----- ----- <u>경우에는</u> ----- ----- -----. 1. ~ 7.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 필요한 경우 조례(안) 전문을 첨부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실·과장, 전
화: ○○○-○○○○, FAX:○○○-○○○○)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규칙안의 입법예고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함.

(별지 제7호서식)

< 의회제출 조례안 제안서식 (예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1. 제안이유 :
- 2. 주요내용
 - 가. (안 제○조)
 - 나. (안 제○조 및 제○조)
 - 다. (안 제○조제○항)
- 3.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시)
- 4. 참고사항

(별지 제8호서식)

< 조례안 재의요구안 형식 (예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로부터 이송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조제○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1. 재의요구이유

- 가.
- 나.
- 다.

2. 첨부서류

-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안
- 나. 관계법령발췌서
- 다. 참고사항

(별지 제9호서식)

조례(규칙) 제정·개폐상황 보고

제안자	구청장 (), 의회의원 (), 주민 ()		
규제개혁위원회	제 회 (. . .)	규제심사결과	신설, 강화, 폐지, 완화 중 선택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의결일		이송일	
공포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		재의요구기한	
근거법령			
소관부서			
관련중앙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000과		
제정·개폐사유	○ “제안서 참고”		
주요내용	○ “제안서 참고”		
검토의견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7-446호

취·등록면허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황**영 외 10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16년 12월 독촉 및 17년 02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16년 12월 독촉 및 17년 02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17.02.28.을 2017.03.31.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7. 03. 0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취득세 2017년 02월 수시분 및 2016년 12월 독촉분 공시송달내역

(단위: 원)

연번	세목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납세자 주소	납세번호	공고사유	세액합계
1	취득세	황**영	681006-*****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88번길 19, 401호 (간석동,해피하우스)	101501 2016 12 2 510 070759	수취인미거주	1,904,370
2	취득세	황**영	681006-*****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88번길 19, 401호 (간석동,해피하우스)	101501 2016 12 2 510 070779	수취인미거주	1,495,890
3	취득세	전**숙	6208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45번길 48-26, 3동 301호 (구월동,한미빌라)	101501 2016 12 2 521 071248	수취인미거주	507,570
4	취득세	김**훈	9804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45번길 48-26, 3동 301호 (구월동,한미빌라)	101501 2016 12 2 521 071252	수취인미거주	338,360
5	취득세	최**락	600512-*****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 10동 106호 (부평동,동아아파트)	101501 2016 12 2 650 071519	수취인미거주	540,400
6	취득세	(주)브**플**스	1201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54번길 42 (고잔동, 남동공단97블럭6롯데)	101501 2016 12 2 800 071145	수취인미거주	281,620
7	취득세	(주)브**플**스	1201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54번길 42 (고잔동, 남동공단97블럭6롯데)	101501 2016 12 2 800 071147	수취인미거주	28,461,610
8	취득세	강**진	34011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10번길 6, 좌호 1층 (조원동)	101501 2017 02 2 510 006693	수취인미거주	1,312,860
9	취득세	강**경	800625-*****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9, 101동 1106호 (청담동,청담우방아파트)	101501 2017 02 2 551 006710	수취인미거주	965,780
10	취득세	최**란	860114-*****	서울특별시 용산구 만리재로24길 32, 101호 (서계동)	101501 2017 02 2 580 006878	수취인미거주	1,706,200
11	취득세	김**진	3303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서로 8 (운연동)	101501 2017 02 2 650 005822	수취인미거주	974,72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7-4호

공 시 송 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관련 의정활동비 이중지급(휴대전화 사용료)에 따른 반납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불능인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기 2017.2.28.일을 2017.3.31.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장

1. 공고기간: 2017. 3. 2. ~ 3. 16. (14일간)

2. 공고대상

납부자명	공고내용	주소 또는 거소	부과금액	공시송달사유	비고
천**숙	휴대전화 사용료 반납 고지서 공시송달	인천 남동구 남촌로84번길 38, 302-****(남촌동, *****아파트)	1,811,620원	수취인 부재	
안**태	휴대전화 사용료 반납 고지서 공시송달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0, 4-****(간석동, **아파트)	1,679,140원	폐문 부재	

3. 게시장소: 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4.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의정팀(☎032-453-5023)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남동구 의회사무국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위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7-2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158번길 15-5 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8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8-159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69번 길	34	2009.09.17.	문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 는 도로	2017.02.28.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문화로169번길34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34을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3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1 58번길	15-5	2014.07.25.	서창방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 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7.02.28.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서창방산로158번길15-5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5-5을건물번호로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7-6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244번 길	10	2009.11.16.	석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 하는 도로	2017.02.28.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석산로244번길10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0을건물번호로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2-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8	2017.02.28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